

(비공식 번역본)

투자위원회 고시

제10/2561호

투자의 해,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 방안

투자위원회는 불기 2557년(2014년) 12월 3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2/2557호 투자촉진 정책 및 기준에 따라, 태국의 목표산업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활성화되고, 특히 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불기 2520년(1977년) 투자촉진법 제16조, 제18조, 제31조 및 제3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는 바이다.

1항. 방콕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자촉진 구역으로 지정한다.

2항. 3항의 조건에 따른 프로젝트는 법인세 면제 기간 종료 후 3년간 법인세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항. 조건

3.1 항공 수송업, 해상 운송업 등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활동을 제외하고 A1, A2 및 A3에 속한 활동이어야 한다.

3.2 기본적인 투자촉진기준 및 기타 촉진방안 모두를 포함한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이 8년을 넘지 않은 프로젝트여야 한다.

3.3 토지대와 운영경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이 최소 10억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3.4 운영 개시(commencement of operation) 신고서를 규정된 운영 개시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조건이 충족할 때 이 방안에 따른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서 제출시 투자유치법 제31조에 따른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과 면제 한도액이 남아 있어야 한다.

3.5 통지서(Notification letter) 수령 때부터 운영 개시 때까지 모든 절차와 관련한 진행 기간의 연장은 불가하다.

4항. 본 방안은 불기 2561년(2018년) 11월 19일부터 불기 2562년(2019년) 12월 30일까지 제출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하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일 불기 2561년(2018년) 12월 11일

(General Prayut Chan-o cha)

투자위원회 의장